

북한의 탈북 감시 및 처벌 강화와 우리의 대응

Online Series CO 11-30

이 규 창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지난달 30일 오전 3시 20분경 북한주민 21명이 목선을 타고 서해상으로 남하하다가 우리 해군 함정에 의해 발견됐다. 올 들어 여섯 번째 해상을 통해 탈북을 시도한 사례다. 또한 지난달 25일 북한 양강도 혜산 부근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측 도로에 올라선 탈북 남성이 북한 경비대가 쏜 것으로 보이는 총에 맞아 쓰러져 숨진 사진이 11월 8일 언론에 보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2011년 동서해를 통한 해상 탈북 사례〉

2월 5일	북한 주민 31명(남성 11명, 여성 20명), 어선 타고 서해 연평도 해상으로 남하, 4명 귀순, 27명 50일 만에 송환
6월 11일	북한 주민 9명, 소형 어선타고 서해 우도 인근 해상으로 귀순
6월 26일	북한 주민 3명,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귀순 의사 표시
9월 13일	북한 주민 9명, 동해에서 어선타고 탈북한 뒤 일본 해상에서 표류, 10월 4일 입국
10월 4일	북한 주민 3명, 2톤급 목선 타고 동해에서 탈북
10월 30일	북한 주민 21명, 5톤급 목선 타고 대청도 서쪽 해상서 해군에 발견, 모두 귀순 의사 표명

이 사건들의 발생 배경에는 2009년 4월 북한의 형법 개정과 후계자 김정은이 있다. 필자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은 2009년 4월 형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선군사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9년 개정 형법은 체제유지와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탈북과 관련하여서는 탈북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¹⁾ 대북언론매체들에 따르면 김정은은 후계자로 공식 등장하자마자 탈북행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11월 18일 김정은이 ‘국경에서 시범으로 경적을 한 번 울리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이 지시에 따라 국가보위부, 보위사령부, 중앙당 간부들로 이뤄진 검열대가 국경지역에 파견돼 해당지역의 보위부보안부원과 함께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불법월경 저지 및 탈북자 색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후계자 김정은의 지시로 기존 5호담당제에서 3호담당제로 국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였다고도 한다.²⁾ 올해 1월 3일에는 김정은이 국가안전보위부에 ‘중국 내 탈북자를 모조리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 명령에서 김정은은 “정치사상 진지를 허물어뜨리는 자들이 바로 중국의 탈북자들”이라며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모두 잡아들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라고 한다.³⁾ 그리고 올해 4월에는 탈북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지역에 조명지뢰를 매설하기 시작했다고도 한다.⁴⁾ 올해 5월 3일에는 김정은 명의로 북중 접경지역에 탈북자 단속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⁵⁾ 후계자 김정은이 탈북자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등 북한의 공안기관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 탈북자 단속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⁶⁾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올 들어 해상을 통한 탈북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북중 국경지대에서 탈북감시가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김정은의 탈북 감시 강화 지시로 탈북자 단속 및 처벌도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첫째, 탈북자 색출 및 가족들에 대한 단속이 북한 내륙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내륙지역에서 탈북자 색출 및 감시가 이루어진 것은 예전에는 없었던 현상이다.⁷⁾ 둘째, 중국 땅에 도착한 탈북자를 사살한 것도 이례적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경비병들에게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주민들을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는 하였지만 중국 땅에 도착한 탈북자에게 총을 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으로 가는 탈북자도 남한으로 도망치는 조국반역자로 간주해 즉결 사살하라는 내부 지시가 내려

- 1) 이규창, “김정은 후계구도와 북한 인권: 인권 관련 법령 정비를 중심으로,” 『온라인시리즈 CO 11-11』 (서울: 통일연구원, 2011. 4).
- 2) 데일리엔케이<www.dailynk.com>, “김정은, 5호담당제를 3호담당제로 바꿔라” (검색일: 2011. 5. 2)
- 3) 열린북한방송<www.nkradio.org>, “김정은, 신년초부터 “중국 내 탈북자 모조리 잡아들이야” (검색일: 2011. 5. 3).
- 4) 열린북한방송<www.nkradio.org>, “북한, 북-중 국경지역에 탈북 막기 위한 조명지뢰 매설 중” (검색일: 2011. 5. 2).
- 5) 데일리엔케이<www.dailynk.com>, “北 김정은 ‘비법월경자 엄중 처벌’ 지시” (검색일: 2011. 5. 3)
- 6)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후계자 특별지시에 北 탈북자 단속 ‘올인’” (검색일: 2011. 5. 2).
- 7) 열린북한방송<www.nkradio.org>, “탈북자 색출 및 가족 감시 강화 평남 등 내륙까지 확대” (검색일: 2011. 5. 3).

왔으며, 탈북자를 사살한 군인은 공훈을 세운 것으로 인정받아 표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⁸⁾

북한의 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은은 후계구도 안정화 차원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건설을 표방하고 있어 내부통제 및 처벌 강화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향한 북한 주민들의 열망은 누구도 꺾을 수 없다. 해상을 통해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서해와 동해에서 해상 경계와 구조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탈북 감시 및 처벌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 중국 인권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중국 땅에 이미 발을 디딘 탈북자를 향해 총을 발사하였다는 것은 양국의 이해와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과 중국 양국 간에 탈북자 사살에 관한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탈북행위가 설령 북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국반역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통하지 않고 현장에서 사살하는 것은 생명권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통해 형을 판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북한의 법령에도 반한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북한도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국제인권 B규약 또는 자유권규약)에도 반한다. 자유권규약은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본인의 출석 하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14조 제3항).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북한의 행태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형사법제를 개선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셋째, 탈북자 문제는 궁극적으로 북한인권 개선과 연계되어 있다. 외부로부터의 정보가 유입될 때 북한이 아무리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여도 정보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줄기를 막지 못할 것이다. 외부 정보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고, 깨어난 북한주민들의 의식은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제 2011년도 달포밖에 남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북한인권법(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하면 좋겠지만 일단 시작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선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지체될수록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커질 것이다. 우리 헌법의 해석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8) 『동아일보』, 2011년 11월 7일, p. A1.